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229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울 담당변호사 김영철, 송종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담당변호사 권종원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합자회사 C 사이에 2019. 7. 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20. 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합자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7. 2. 접수 제70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20. 2. 7. 접수 제1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합자회사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8. 2. 13. 합자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한국전력공사, 보험금액 76,000,000원, 보험기간 2018. 2. 13.부터 2019. 5. 12.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2. 14. 보험기간을 2020. 5. 12.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2) C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전력공사가 2019. 11. 14.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12. 6. 한국전력공사에 22,933,750원을 지급하였다.
- 3)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0차311호), 2020. 1. 28. ‘C은 원고에게 23,137,320원 및 그 중 22,933,750원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0. 4. 16.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은 2020. 5. 2.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 1) C은 2019. 7. 1.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7. 2. 접수 제7095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2) C은 2020. 2.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2. 7. 접수 제1202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C의 채무초과 상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9. 1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D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등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2019. 11. 28. 위 가압류 신청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존재 및 그 사해성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9753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

4)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5,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9. 11. 28.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카단368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제천시 J 전 374㎡를 포함한 C 소유 7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시점에 이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② 원고의 가압류신청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이 총 6개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채권의 합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다.

순번	일자	가압류결정	채권자	청구금액
1	2019. 8. 22.	춘천지방법원 영원지원 2019카단106	D 주식회사	94,141,541원
2	2019. 10. 1.	춘천지방법원 영원지원 2019카단 1126	E 주식회사	35,969,390원
3	2019. 10. 1.	춘천지방법원 영원지원 2019카단1135	F 주식회사	78,713,369원

4	2019. 10. 31.	춘천지방법원 영원지원 2019카단1149	G 주식회사	47,163,270원
5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20488	주식회사 H	249,844,249원
6	2019. 11. 26.	춘천지방법원 영원지원 2019카단238	I 주식회사	11,776,874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7. 8. 3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져 있었다. 그리고 제천시 J 전 374㎡에는 근저당권자 K,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L,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 각 마쳐져 있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고, 선행가압류등기의 대부분이 주로 대출금 미변제로 인한 것이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광영사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전기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 지급을 3개월 동안 연체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늦어도 가압류신청을 한 2019. 11. 28. 당시 이미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짐으로써 C이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사해행위를 한 C의 사해의사도 마찬가지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원고가 2019. 11. 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2. 18.에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

별지

목 록

1. 강원도 영월군 M 주유소용지 737㎡
2. 강원도 영월군 M
[도로명주소] 강원도 영월군 N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휴게매점)
76.68㎡
3. 강원도 영월군 O 주유소용지 675㎡
4. 강원도 영월군 P 주유소용지 859㎡
5. 강원도 영월군 Q 임야 94,382㎡

